

중소기업청 공고 제 2014-275 호

민간자격 신설 금지분야 세부사항 공고

「자격기본법」 제17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민간자격의 신설 금지 분야에 관한 세부사항을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

2014년 8월 13일

중 소 기 업 청 장

1. 제목 : 중소기업청 소관 민간자격 신설 금지분야 세부사항 공고
2. 적용기간 : 2014.8.13. ~ 재 공고시 까지
3. 민간자격 신설 금지분야 세부사항

㉑ 다른 법령에서 금지하는 행위와 관련된 분야

- ①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3조에 규정된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와 중복되는 분야의 민간자격 신설 금지
- ②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4항에 따라 경영지도사 또는 기술지도사와 같거나 유사한 명칭의 사용 금지

※ 예) 경영지도사와 혼동을 주는 “위기경영지도사”, “경영관리사”

㉒ 선량한 풍속을 해치거나 사회질서에 반하는 행위 관련 분야

㉓ 국민의 생명·건강·안전 및 국방에 직결되는 분야